

다자녀 특별공급 안내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(8세대) - 155㎡A : 4세대 - 84㎡B : 2세대 - 83㎡C : 2세대

구분	내용	
공급비율	◎건설량의 10이내/9억원 초과 주택 제외	◎입주자모집승인권자 : 일부 증감 가능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경과한 자 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임신의 경우 [임신진단서] 제출하고,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자격유지 ◎ 유지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,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(※ 분리세대 포함)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[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] 점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 ※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(연·월·일 계산) 	◎ 해당지역(거창군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

평점요소	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	기준	점수	
①	미성년 자녀수	40점	미성년 자녀 5명이상	40	- 자녀(태아,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) 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	미성년 자녀 3명	30	
②	영유아자녀수	15점	영유아 3명이상	15	-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 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	영유아 2명	10	
			영유아 1명	5	
③	세대 구성	5점	3세대 이상	5	-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
			한부모 가족	5	
④	무주택 기간	20점	10년 이상	20	-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,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무주택기간을 산정 -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⑤	해당 시·도 거주기간	15점	10년 이상	15	-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 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※ 시는 광역시, 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, 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 의 경우 서울, 경기,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
	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⑥	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5점	10년 이상	5	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계		100점			